

公報發刊業務取扱規程



特許廳訓令 第11號

1977. 8. 26.

第1條 (目的) 이規程은 工業所有權公告公報의 發刊에 관한 事務處理基準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發刊回數) 公報의 발간 및 配布回數는 當該年度運營計劃에서 定한다.

第3條 (公報의 編纂區分과 그 順序) ①特許公報 및 實用新案公報의 編纂區分과 그 順序는 다음과 같다.

第1産業部門(農水産 食糧關係) (第1類~第8類, 第32類~第38類) 第2産業部門(探鑛, 金屬, 化學關係) (第9類~第31類) 第3産業部門(纖維關係) (第39類~第48類) 第4産業部門(原動機, 電力, 工作, 原子力關係) (第49類~第76類, 第136類) 第5産業部門(運輸, 土木, 建築, 衛生關係) (第77類~第95類) 第6産業部門(通信, 寫眞, 測定關係) (第96類~第113類) 第7産業部門(事務用品, 印刷, 雜貨關係) (第114類~第135類)

②意匠公報의 刊查구분과 그 순서는 意匠法施行令 第3條에서 정하는 物品類別區分에 따른다.

③商標公報의 刊查구분과 그 순서는 商標法施行令 第5條에서 정하는 商品區分에 따른다.

④審決公報는 審判, 抗告審判事件으로 分類하되 權利別, 審判種類別로 刊查한다

第4條 (公示送達事項의 掲載區分) 各公報에 掲載한 公示送達事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에 관한 사항과 辨理士에 관한 사항은 특허公報에 게재한다.
2.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과 審判 및 抗告審判에 관한 사항은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한다.
3. 商標에 관한 사항은 商標公報에 게재한다.

4. 意匠에 관한 사항은 意匠公報에 게재한다. 다만, 의장공보가 適期에 發行될 수 없을 때에는 상공公報에 게재한다.

第5條 (公報掲載 通報) 公報에 게재하고자 하는 部署에서는 公報掲載原因의 發生後 遲滯없이 이를 公報發刊課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6條 (公報內容의 順位) 公報內容의 掲載順位는 掲載物이 公報발간과에 接受된 順序로 하되 발간은 一册發刊의 基礎單位가 될 때까지 保留할 수 있다.

第7條 (公報掲載事項의 訂正要求) 審査官 또는 審判官은 公報에 게재하고자한 사항에 대하여 追加, 削除, 訂正, 取消 등을 하고자 할 때는 所屬局·所長의 承認을 받아 公報발간과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8條 (公報 및 公告의 番號賦與) 公報에는 累年一連番號를 賦與하고 公告에는 年度別一連番號를 부여한다.

第9條 (公報原稿의 校正) 審査官 또는 審判官이 公報校正紙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정하고 校正紙에 確認·捺印하여 公報발간과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0條 (公報의 配布) ①公報의 配付處 및 配布될 公報部數는 廳長의 裁可를 얻어 確定되며 이를 變更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公報발간과는 公報配布台帳을 備置하고 公報配付處別配布部數를 明確히 記錄하여야 한다.

附 則

이 규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特許廳諸手當支給要綱



特許廳訓令 第12號

1977. 8. 26.

第1條 (目的) 本要綱은 特許廳諸手當支給의 對象과 要領을 定하여 手當支給을 効率的으로 執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對象) 수당지급의 대상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1. 辨理士法施行令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辨理士試驗을 위한 試驗委員手當과 出題手當, 監督手當, 採點手當.
2. 辨理士法施行規則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하는 辨理士資格銓衡試驗을 위한 試驗委員手當과 出題手當, 監督手當, 採點手當
3. 辨理士法施行令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辨理士懲戒委員會委員手當

4.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發明補償審議會委員 및 專門委員手當

5. 特許權의 收容施設 등에 관한 規程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審議委員會 委員手當

6. 特許法 第80條 및 第5項 및 實用新案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囑된 者에 대한 手當.

7. 其他法令에 의하여 國家의 事務를 委囑한데 대한 수당.

第3條 (支給調整) 前條의 수당은 每年度豫算의 範圍內에서 調整하여 支給할 수 있다.

附 則

本要綱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